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3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백선희·안규백·박홍근

이학영 • 전종덕 • 김재원

신영대 · 이춘석 · 황운하

서왕진 • 이해민 • 이소영

김준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·중·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.

그런데 학비, 생활비 등이 초·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,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 따라서,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,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

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9조제1항제1호마목).

법률 제 호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마목 중 "초·중·고등학생"을 "초·중·고등학생·대학생"으로, "비용 지원"을 "비용 지원."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)	제9조(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)		
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	①		
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.			
1. 금전 또는 현물(現物) 등의	1		
직접지원		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	
마. 교육지원: <u>초·중·고등</u>	마 <u>초·중·고등학</u>		
<u>학생</u> 의 수업료, 입학금, 학	<u>생·대학생</u>		
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			
등 필요한 <u>비용 지원</u> <u><단</u>	<u>비용 지원. 다</u>		
<u>서 신설></u>	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교		
	육지원을 받는 경우 그에		
	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		
	아니한다.		
바. (생 략)	바. (현행과 같음)	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